

『2026년 블루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』 연장 공고

「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 블루바이오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성장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『블루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변경내용(공고기간)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2026. 02. 10. ~ 2026. 03. 02.	2026. 02. 10. ~ 2026. 03. 10.	※ 8일 연장

2026년 03월 04일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

1. 사업목적

- 블루바이오 소재·제품의 R&D 역량 체계적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
-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한 지역생태계 활성화 도모·선도하는 강소기업 육성 촉진
- 전시/참가 지원을 통한 기업 정보교류 및 기술 홍보 효과

2. 사업내용

구분	세부 지원 내용		지원 규모
패키지형 지원 (복수선택)	기술 지원	시제품 제작, 시험 분석, 제품 인증, 지식재산권 등	최대 20백만원 (부담금10%이상)
	사업화 지원	제품 고급화, 제품 디자인, 기술 동향 조사 등	
단계별(기술개발) 지원	생산공정	운영 공정 (5단계)*중 기업 희망 연차별 단계지원	매년 90백만원 (부담금10%이상)
마케팅 지원	전시/박람회	국내 전시/박람회 참가비, 장치비, 홍보비 등	최대 2백만원 (부담금10%이상)

3. 지원근거 :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4.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6. 11. (8개월)

5. 지원대상

-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**경북도** 내 본사·연구소·공장 보유기업
- ※ 공동 연구·개발 기관의 경우,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경상북도 내 본사·연구소·공장을 보유한 기관으로 함

6. 지원분야

구분	세부 내용	
제약 산업	• 의약품 : 항암제, 항염증제, 항생제 등 • 약물 전달체 : 키토산 등	
에너지 산업	• 수소생산용 미생물 • 해양 조류(Algae)를 이용한 바이오디젤, Light Capture 등	
소재 산업	연구용	• 효소 등 연구용 시약 • 해양생물(추출물) 라이브러리
	산업용	• 안정성 독성 검사용 생물 모델, 유전자 마커 및 유전체 등 • 계면활성제, 고분자, 세라믹, 접착제 등 • Bioreactor 및 정제용 시약(Reagent) 등 • 나노소재용 도말, 생산 공정용 미생물 조류 등 • 중금속 제거용 및 오염진단용 제품, 담수화(Gesalination) 등
기능성 식품/ 화장품 산업	• 항산화제, Probiotics, 칼슘제, 질병 예방 및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등 • 주름 방지, 미백, 보습, 황산화, 피부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	
의료 산업	• 의료소재(바이오 세라믹 등 임플란트 카테터용 오염방지제, 의료기기용 부품소재) • 질병 진단 키트 등 • 바이오세라믹 등 생체재료	
그 외	• 해양 생물체 발굴, 제작, 재배 또는 사육 등 • 색소·식감 개선용 식품첨가물 • 임상·비임상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지원 • 해양 생명 공학 기술 관련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대행하는 활동 등	

II 패키지형 지원사업 상세 내용

1. 패키지형 지원사업(기업 선택형) 지원내용

분야	프로그램(한도)	지원 내용	최대한도	
기술·사업화 지원	필수	시제품 제작 (15백만원)	•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 상품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(설계비, 제작비, 성능평가비 등)	기업당 최대 20백만원 (총사업비 10%이상)
		제품 고도화 (15백만원)	• 기존 제품 기능 추가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제작비 등 • 신규 및 기제작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제작	
	선택	시험 분석 (5백만원)	•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분석, 테스트, 인증서 발급 등 (연구기관, 대학 등 대상) • 제품 신뢰성, 성능, 표준화, 시험 분석 등	
		제품 인증 (5백만원)	• 제품 인증, 시스템 인증 등 국내외 공인인증 획득 (인증비, 컨설팅 비용 등)	
지식 재산권/기술 동향 조사 (5백만원)	•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출원 (특허법인(변리사) 대행료, 관납료 등)			

2. 지원방법 : 간접지원

3.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필수 택1+선택 택1 이상)

※ **민간 부담금 : 현금 총사업비의 10% 이상**

4. 평가내용

○ 평가방법 : 서면평가 ※ 서류평가의견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선정 (70점 이상)
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가지표	배점
계획의 적정성 (20)	목표 명확성	· 목표, 내용 및 결과(산출)물에 대한 명확성	10
	전략 적정성	· 추진 방법 및 계획의 구체성 ·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	10
기술·제품 특성 (30)	기술성	· 기술·제품의 주요 특징 및 차별화 요소 · 기존 기술·제품 대비 개선 또는 발전 가능성	15
	시장성	· 목표시장 특성, 성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등	15
사업수행 (25)	사전 준비도	· 기술, 시제품, 기초자료 등 사전 준비 수준 ·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 검토 및 기획의 충실성 · 외부 자원 활용을 포함한 사업추진 전략의 합리성	25
지원 효과성 (25)	상용화 적정성	· 최종 결과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	15
	파급 효과	·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확산효과	10

※ 점수가 동점일 경우, 기술·제품 특성·사업수행·지원 효과성·계획의 적정성 항목 총점이 높은 순 선정

5. 제출서류

구분	서류 목록	비고
필수	1. [서식 제1호] 지원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	
	2. [서식 제2호]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
	3. [서식 제3호]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	
	4. [서식 제4호]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
	5. 사업자등록증 사본	
	6. 견적서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(비교 견적서 포함)	
	7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
	8.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	
	9. 최근 3년 고용인원 증빙서류(고용보험 가입자 명부)	
선택	10. 최근 3년 지식재산권(IP), 인증, 수상실적 등	
	11. 기타 기업 소개 자료 (브로슈어, 카탈로그 등)	
	12. [서식제5호] 수요기업 협약서 * 제출 시, 우대 배점 10점	

6. 추진일정



IV 신청 및 접수

1. 신청기간 : 2026. 02. 10. ~ 2026. 03. 10. (화) 18:00까지

2. 신청방법 :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
※ <https://www.ptp.or.kr> 알림 마당 - 사업공고 - 온라인 신청/접수

① 기업 회원가입(필수) → ② 기업정보 및 신청 정보입력 → ③ 첨부파일(신청 서식) 업로드 → ④ 내용 확인 후 신청/접수

V

유의사항 및 기타사항

구분	주요 내용
지원 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부도, 휴폐업인 경우 - 국제,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면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- 직전년도 기준 결산 부채비율이 500% 이상 또는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-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-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기타 유의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- 선정 평가 전 신청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- 지원 대상의 적격성, 필요성, 사업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 -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- 과제수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 기간 중 중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- 당 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반드시 사전에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승인 없이 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- 협약종료 후 일주일 이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업비 집행증빙(기업부담금 집행 증빙 포함)을 함께 제출해야 함 -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-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VI

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바이오사업본부	석아영	054-223-2784	natto0526@ptp.or.kr